종 합 계 좌 약 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개별 금융투자상품을 종합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종합계좌의 개설 및 이용에 대해서 고객과 한양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권리.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① '종합계좌'란 고객이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의 개별계좌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좌관리시스템을 말한다.
- ② '종합계좌거래'란 종합계좌를 이용하는 개별 금융투자상품(주식, 파생상품, 펀드, RP, CP 등)에 대한 거래를 말한다.
- ③ '종합증권카드'란 종합계좌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증권카드를 말한다.
- ④ '개별계좌'란 종합계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개별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한 계좌(매매거래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계좌 등)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좌의 이용)

- ① 고객은 종합계좌개설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
 - 1. 주식(위탁매매)
 - 2. 파생상품
 - 3. 펀드
 - 4. RP, CP, CD
 - 5. 기타 금융상품
- ② 고객은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 개설과 별도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위한 개별계좌의 개설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좌의 개설)

- ① 고객이 회사와 처음 거래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② 고객이 종합계좌를 개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1.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한 개별계좌의 자산 인출

- 2. 종합계좌내 개별계좌간 자금대체 업무
- 3. 종합계좌내 전 개별계좌의 잔고조회서비스

제5조(종합계좌거래인감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등록하고 인감이 필요한 모든 거래시 등록한 종합계좌거래인감(또는 서명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좌용 비밀번호의 등록)

고객이 종합계좌 개설을 신청할 때에는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비밀번호 가 필요한 모든 거래시 종합계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실지명의에 의한 계좌개설 및 관리)

고객이 종합계좌개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고객 본인의 실지명의임을 확인한 후 종합계좌를 개설한다.

제8조(종합계좌의 해지 등)

- ① 고객은 회사에 개설한 종합계좌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종합계좌의 해지는 종합계좌 내의 모든 개별계좌거래의 해지를 말하며 고객은 모든 개별계좌의 거래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종합증권카드의 이용)

고객은 종합증권카드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요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 1. 영업점 창구에서의 자산인출 거래
- 2. 현금자동거래(ATM)에서의 자금인출 거래

제10조(현금 및 증권의 수납)

고객이 증권 등의 매입대금을 입금 또는 유가증권의 실물을 입고할 경우 입금(고) 전표를 작성한 후 현금 또는 증권과 함께 창구에 제출하며, 회사는 수납한 현금 또는 증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입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1조(현금 및 증권 등의 출납)

- ① 고객이 현금의 출금 또는 증권의 출고를 청구할 경우 출금(고)전표에 출금할 금액, 증권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한 종합계좌 거래인감 또는 서명감을 날인한 후 종합증권카드와 함께 창구에 제출한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계좌주의 실명을 확인하고 고객이 제출한 종합계좌 거래인감 및 종합계좌용 비밀번호가 등록한 사항과 일치하였을 경우 현금 또는 증권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 ③ 회사는 현금 또는 증권의 지급과 함께 출금(고)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한다.

제12조(개별계좌간 자금대체업무)

- ① 종합계좌를 개설한 고객은 종합계좌 내 본인 개별계좌 간 자금대체서비스(이하 '계정대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고객이 계정대체거래를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는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에서 대체출금하여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로 대체입금 처리한다.
- ③ 고객은 대체거래가 완료되면 즉시 출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과 입금을 지정한 개별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을 비교하여 반드시 대체거래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거래에 의문점이 있거나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거래영업점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종합증권카드, 종합거래인감의 분실 및 고객정보사항의 변경)

- ① 고객이 종합증권카드나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 영업점에 전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종합증권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등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 영업점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③ 종합거래인감을 분실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종합거래인감을 회사 영업점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의 정보 중 주소, 전화번호는 전화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며 종합거래 인감 등의 기타 정보는 회사 영업점에서 서면신고에 의해 변경하여야 한다.

제14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 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및 질권 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16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 2.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

제17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9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기타)

- ① 고객이 전화 등에 의하여 매매거래, 부가서비스의 이용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위탁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회사는 위탁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종합계좌의 개별계좌에서의 매매거래시 개별계좌의 약관이 이 약관에 우선한다.
- ③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 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199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종전 종합거래계좌약관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거래계좌는 이 약관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계좌로 본다.

부 칙

이 약관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09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1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1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